01_04.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쌍방이 2륜차(원동기 장치자전거 포함)인 경우에도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기준을 적용하며. 한쪽이 2륜차인 경우에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사고기준에 의한다.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 승합, 화물, 특수, 2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따라서 2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며, 원동기장치가 없는 일반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2륜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륜차 중에서 배기량 50cc 미만인 것은 제외한 모든 2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2륜차 중에서 배기량125cc 이하의 2륜자동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여기서의 "차"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를 말한다.)

◈ 수정요소

이하에서는 수정요소로써 여러 도표에 중복하여 적용되는 요소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단, 야간, 간선도로, 주택상점가, 현저한 과실, 중과실은 자동차와 보행자사고의 용어 풀이와 동일하다.

수정내용	설명
야간	* 보행자는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나.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한다. *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 또한, 운전자가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보행자와의 사고 시에는 운전자의 법규위반에 따라 이는 중대한 과실로써 오히려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감산적용한다. * 여기서 '야간'이라 함은 대부분의 차량들이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시각으로써 해가 진후부터해가 뜨기 전까지를 만한다.

	# 차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거 모든 차가 밤(해가 진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말한다.)에 도로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 차폭등, 미등 그밖의 등화를 켜야한다.
간선도로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간선도로인 경우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고 고속주행하므로 보행자는 통상의 도로에 비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요하므로 보행자의 과실비율을 가산한다. *여기서 간선도로라 함은 차도폭이 14m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차로가 왕복 4차로 이상이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말한다.
대형차	*대형차는 파괴력이 높아 운전상의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결과발생에 대한 많은 책임을 부담하며(우자위험부담의 원칙), 교차로 등을 통과시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등 다른 자동차의 진로방해정도가 크고, 위험회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가산한다. * 여기서 대형차의 의미는 타방의 차량에 비해 대형인 차량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 자체가 대형인 차량을 말한다. * 대형차의 범위는 36인승이상의 승합차,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의 화물차, 견인능력 5톤 이상의 특수차, 건설기계,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차를 말한다.
명확한 선진입	* 교차로에 진입시(일시정지선이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통과하는 시각) 우선 진입한 차량이 타차량보다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 명확한 선진입의 여부는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 까지의 거리와 양차의 속도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순위는 선진입한 차에게 제일의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선진입 좌회전차와 직진 및 우회전 차와의 사이에는 직진 및 우회전차가 선진입좌회전차보다 우선한다. 다만 좌회전차가 기좌회전한 경우에는 기좌회전차가 직진 및 우회전한 차보다 우선한다. 또한 동시에 교차로세 진입 시에는 긴급자동차, 대로차, 우측차의 순으로 통행의 우선권이 있다.
서행 또는 감속 불이행	* 서행은 차가 즉시 정질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며, * 감속은 통상의 속도보다 명확하게 감속하는 것으로써 제한속도의 1/2전후를 의미한다.

	* 서행할 경우는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등으로써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교차로를 일단 진입한 이후에는 서행의무가 없으므로 진입당시의 서행여부에 따라 이를 수정요소로 적용한다.
소좌회전 ,대좌회전	* 소좌회전은 교차로의 중심 내측에 다가서지 아니하는 좌회전으로써 중앙선을 물고 운전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대좌회전은 소좌회전의 반대의 경우로써 미리 진로 중앙으로 다가서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말한다.
진로변경 금지장소	차마는 안전표시등에 의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진로변경이 안전표시로써 금지된 교량, 터널, 교차로, 굴곡도로 등에서의 진로변경(차선변경)중 사고시 진로를 변경한 차마에게 과실을 가산한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방향으로 진로변경 중 사고는 전용차로 위반과 중복되므로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도로 구간에 진로변경 금지선 표시는 백색실선으로 표시한다.
전용차로 위반	차종별 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와 다인승전용차로로 구분함)를 위반하여 차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전용차로를 위반한 각각의 자동차(2륜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에서 가산요소로 수정한다. 노선버스등 전용차로 운행차량이 전용차로를 이탈하여 타차로로의 차로변경 중 사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버스전용차로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에 의거 노선버스 및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이외의 차마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금지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6조의 3에 의거 택시의 승하차시 일시 통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경우, 도로공사나 파손, 기타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다인승전용차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에 의거 3인승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다.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교차로에서의 좌·우회전시 또는 차로를 변경할 때 진로변경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와 방법을 위반한 경우 이를 수정한다. *진로변경 신호의 시기 : 좌·우회전, 횡단, 회전,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30m(고속도로에

	서는 100m)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한다.
머리를 내밀고 대기	차가 노외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노외차가 차체를 차도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를 하다가 발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따라서 노외차가 머리를 내밀고 정차중인 상태에서 타차와의 충돌사고는 노외차에게 과실비율을 수정 요소로써 가산할 수 없으며, 별도의 유사 과실도표를 적용해야한다.
교차로 정체 중 진입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있어 다른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과실을 수정한다.
회전 위험장소 ,금지장소	* 회전위험장소는 시야가 불량한 굴곡도로, 고개마루 부근,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차량의 속도가 높고 교통량이 특히 빈번한 도로, 눈이나 비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장소를 말한다. * 회전금지장소란 중안선이나 기타 교통표지에 의해 회전이 금지된 장소를 말한다.
주택,상점가	* 주택, 상점가는 보행자의통행과 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운전자는 보다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 공장이나 관청가 등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많은 출퇴근시간 등에는 감산 적용한다.
현저한 과실	자동차의 과실이 통상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사고회피의무위반(예 : 핸들, 브레이크 조작 부적절 등)의 정도보다 무거운 경우에 한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다만, 차측의 과실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 부주의가 현저한 경우 *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미달운전 *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 핸들,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등이 있을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감산한다.
중과실	상기의 현저한 과실에 비해 그 정도가 중한 법규위반 내용으로써 * 졸음운전 * 도로교통법상 주취한계 초과운전 *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 무면허운전 * 마약 등의 약물운전 등이다.